공 개

의안번호	제 234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8. 11. (임시 제1차)

의결사항

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8. 11.

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관련 수요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□ **ETF·ETN**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하는 **괴리율 요건 강화** 및 괴리율 계산식 명확화(안 제20조의4제2항, 제20조의4제3항 개정)

□ **단일종목 ETF·ETN** 관련 **기본예탁금 포함 범위**를 **명확화**(안 제87조의2 제1항 개정)

4. 참고사항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 지>

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제2항 중 “괴리율이 3%”를 “괴리율(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)이 2%”로 하고, “6%”를 “5%”로 한다.

제20조의4제3항 중 “괴리율이 3%”를 “괴리율(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)이 2%”로 하고, “6%”를 “5%”로 한다.

제8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호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(5)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현금에 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 첨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0조의4(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) ① (생 략)	제20조의4(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회원은 법 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%(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%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. 괴리율(%) = [(종가-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) /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]×100	② ----------괴리율(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)이 2%(----------5%----------. -----)----------.	ETF 괴리율 의무 기준 강화
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%(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%를 말한	③ ----------괴리율(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)이 2%	ETN 괴리율 의무 기준 강화

다)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. 괴리율(%) = [(종가-증권당 지표가치) / 증권당 지표가치]×100	(----------5%----------)----------.	
제87조의2(기본예탁금)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(이하 "기본예탁금"이라 한다)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87조의2(기본예탁금) ① ----------. 다만, 제2호 중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(5)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현금에 한한다.	단일종목레버리지 ETP의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(대용증권 납부 금지)
1.·2. (생 략) ②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자산운용과
연 락 처	02-2100-2661